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3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윤재갑·홍문표·김정호

양정숙 · 위성곤 · 박영순

전용기 • 문진석 • 홍성국

김수흥 · 김민석 · 이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에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이라 함)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 자를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이 그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 불금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 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소 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지급받은 자"를 "지급받은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등은 20

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기본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등) ①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	
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	
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	
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u>.</u>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	
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	
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	
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략)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소득보
	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이 인정하는 경우</u>
	<u>.</u>
_	가.・나. (현행과 같음)
2.	,
	거 이 ㅠ 느 레
	<u>경우 또는 대</u> 토려려이고 저하는 사으고 노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 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
	변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
	こ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 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 략)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②·③ (생 략)②·③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9조(기류자)①·③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자) ①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
3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
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7]) ①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 (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 야 한다.

- 1. (생략)
-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 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1. (현행과 같음) -----지급받은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 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 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 는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